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활동의 정의 규정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92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육활동의 정의 규정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9. 4.
3. 회 부 일 : 2025.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범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의 정의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교육활동의 정의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의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등을 교육활동의 정의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u>교육활동</u>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 ----- ----- ----- ----- ----- <u>교육활동</u> [<u>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u>

1. 2. (생 략)	<u>처리·행정업무 등(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u> 중인----- ----- -----. 1. 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범죄 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함.¹⁾

그러나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적용되는 교육활동의 정의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2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1)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2., p.8

□ 이에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불법정보 유통 등의 범죄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의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등을 교육활동의 정의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교육활동 정의를 ① 교육활동의 종류, ② 지원 업무, ③ 활동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교육활동의 종류) 개정안은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을 규정함.

현행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u>교육활동</u>”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u>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u> 나. <u>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u>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u>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u>

해당 내용은 현행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제4호가목의 내용과 유사하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부분이 제외되고,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부분이 제외된 차이가 있는데,

학교의 장³⁾은 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도 학교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되므로, 현행 「학교안전법」과 같이 학교장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보임.

- 3)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교원지위법」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고, 「학교안전법」상 학교의 정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므로, 두 법률의 학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모두 포함되며, 학교의 장에는 유치원의 원장과 초·중등학교의 교장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4)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제4호가목의 내용 중,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에서 ‘수학여행, 체육대회’를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의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교육활동의 범위가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② 지원 업무) 개정안은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을 교육활동의 내용에 포함함.

먼저 ‘상담’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규정된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도 ‘교육활동 중’의 행위에 상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⁵⁾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에 포함되고 있으나,

5)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개정안에 따라 규정될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면담, 민원처리, 행정업무’는, 현행 법률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이 개정안에 따라 규정될 경우 이를 교원의 교육활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민원처리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⁶⁾ 교사 등의 수행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민원처리 지원계획에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 제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⁷⁾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p.9

참고: ‘교육활동 중’의 예시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6)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7) 「초·중등교육법」

아울러 행정업무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직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⁸⁾ 개정안에 따라 행정업무를 교원의 교육활동에 포함할 경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업무와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③ 활동 형태) 개정안은 교육활동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함.

매체의 발달에 따라 교육활동에서도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이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비대면 활동이 보다 명확하게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8)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 범위를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행위, 상담·면담·민원·행정업무 등 교육활동 지원 업무(비대면 활동 포함)까지 확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함.
- 다만, 「학교안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참고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정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중인-----.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중인-----.

○ 경기도교육청: 일부수정

-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인 ‘행정업무’를 교육활동에 명시하는 것은 교육활동 범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 중 ‘행정업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 비대면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의 비대면 활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경상북도교육청: 일부수정

- 교원의 교육활동 시간 외 발생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위축이나 곤란함이 없도록 ‘교육활동 중’을 ‘교육활동을 위축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